

충청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중 “인사위원회” 를 “충청북도공적심사위원회(이하 “공적심사위원회”라 한다)” 로 한다.

제10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 1(공적심사위원회) ①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6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.

③ 공적심사의결은 재적위원 $\frac{2}{3}$ 이상의 출석과,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